

# 기술사 분류체계 변경에 대한 진행내용

(주)신우지오엔지니어링 - 김 학 청

## 1. 개요

개정된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과학기술부(현 문교 과학기술부)에서 정책연구과제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위탁하였다. 그 중 '기술사 자격종목 정비'와 '기술사 업무영역 설정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7년 8월 한국기술사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술사회에서 개인, 각분회, 임원들의 의견을 모아 기본의견을 작성하여 2007년 10월 한국과학기술원 정책연구팀에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과정은 한국기술사회의 의견제시 내용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이점 이해하고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 2. 현재의 분류체계

### (1) 기술사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사 자격분류 (과학기술부)

※ 기술사 자격을 15개 기술종류별로 구분하였음(국제기준과 유사)

종류	기 술 범 위
기계분야	1.기계제작 2.산업기계설비 3.공조냉동기계 4.건설기계 5.차량 6.기계공정 설계 7.용접 8.금형 9.정밀측정 10.철도차량
산박분야	조선
항공우주분야	1.항공기체 2.항공기관
금속분야	1.철아금 2.비철아금 3.금속재료 4.표면처리 5.금속가공
전기전자분야	1.발송배전 2.전기응용 3.철도신호 4.산업계측제어 5.전자응용 6.전자계산기 7.전기철도
통신정보처리분야	1.정보통신 2.정보관리 3.전자계산조직응용
화학분야	1.화공 2.세라믹
섬유분야	1.방사 2.섬유공정 3.염색가공 4.생사 5.의류
광업자원분야	1.자원관리 2.광해방지
건설분야	1.토질 및 기초 2.토목구조 3.토목시공 4.농어업토목 5.토목품질시험 6.항만 및 해안 7.도로 및 공항 8.철도 9.교통 10.수자원개발 11.상하수도 12.건축구조 13.건축시공 14.건축품질시험 15.도시계획 16.조경 17.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18.지적 19.건설안전 20.화약류 관리 21.건축 기계설비 22.건축 전기설비 23.지질 및 지반
환경분야	1.대기 관리 2.수질 관리 3.소음 진동 4.폐기물 처리 5.자연환경관리 6.토양환경
농림분야	1.식품 2.농화학 3.축산 4.종자 5.산림 6.사실원예
해양수산분야	1.해양 2.수산양식 3.어로 4.수산제조
산업관리분야	1.공장관리 2.품질관리 3.포장 4.산업위생관리 5.기계안전 6.전기안전 7.화공안전 8.소방 9.가스 10.인간공학
응용이학분야	1.제품디자인 2.원자력발전 3.방사선 관리 4.비파괴검사 5.기상예보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사

자격분류(노동부)

※ 기술사 자격은 89개 종목으로 구분하였음(국제기준과 괴리)

기술분야	자격종목
기계	기계제작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차량기술사, 기계공정설계기술사, 용접기술사, 금형기술사, 철도차량기술사
금속	철야금기술사, 비철야금기술사, 금속재료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금속가공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항공및세라믹	항공기술사, 세라믹기술사
전기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전자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조선	조선기술사
항공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관기술사
토목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농업토목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축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섬유	방사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염색가공기술사, 의류기술사
광업자원	자원관리기술사, 화약류관리기술사, 광해방지기술사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국토개발	도시계획기술사, 조경기술사, 지적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농림	종자기술사, 산림기술사, 축산기술사, 농화학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해양	해양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 어로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사
에너지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기술분야	자격종목
안전관리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가스(GAS)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환경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산업응용	공장관리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포장기술사, 식품기술사, 기상예보기술사
교통	교통기술사

(3) 국제기술사(APEC엔지니어, EMF국제등록기술사 포함) 자격분류

※ 기술사 종목을 15개 등록분야로 구분하였음

등록분야(15)
건설공학(Civil Engineering)
구조공학(Structural Engineering)
지반공학(Geotechnical Engineering)
환경공학(Environmental Engineering)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
전기공학(Electrical Engineering)
광업공학(Mining Engineering)
산업공학(Industrial Engineering)
화학공학(Chemical Engineering)
정보공학(Information Engineering)
생명공학(Bio Engineering)
소방공학(Fire Engineering)
빌딩서비스(Building Services Engineering)
유류공학(Petroleum Engineering)
항공우주공학(Aerospace Engineering)



### 3. 주요국가별 종목 분야

※ 각 국 모두 우리나라 기술사법의 종류(분야) 처럼 자격분류

#### 일본(기술사)

- 1.기계부문 2.선박·해양부문 3.항공·우주부문 4.전기전자부문
- 5.화학부문 6.섬유부문 7.금속부문 8.자원공학부문 9.건설부문
- 10.상하수도부문 11.위생공학부문 12.농업부문 13.삼림부문
- 14.수산부문 15.경영공학부문 16.정보공학부문 17.응용이학부문
- 18.생물공학부문 19.환경부문 20.원자력·방사선부문
- 21.총합기술감리부문

#### 미국(PE) 캘리포니아주

- 1.Civil 2.Electrical 3.Mechanical 4.Structural
- 5.Geotechnical 6.Agricultural 7.Chemical
- 8.Control Systems 9.Fire Protection 10.Industrial
- 11.Manufacturing 12.Metallurgical 13.Nuclear
- 14.Petroleum 15.Traffic

#### 영국(CE) Chartered Engineer

- 1.Aeronautical 2.Building Services 3.Chemical
- 4.Civil 5.Computer 6.Electrical 7.Energy 8.Gas
- 9.Lighting 10.Marine 11.Materials 12.Mechanical
- 13.Mining & metallurgy 14.Naval Architects
- 15.Physics 16.Plant 17.Structural
- 18.Water & Environmental Management 19.Welding

#### 호주(CPEng) Chartered Professional Engineer

- 1.Biochemical 2.Chemical 3.Civil 4.Electrical
- 5.Management 6.Mechanical 7.Structural
- 8.Civil and Geotechnical 9.Environmental

### 4. 의견제시내용

- 기술사법령에 의한 분류(15개 분야로 분류)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분류(22개 분야로 분류)

#### - 국제기술사 자격분류(15개 공학분야로 분류)

총 3개 안을 비교·검토하여 한국기술사회의 의견 제출을 위한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① 기존 취득한 자격의 활용을 최대한 보장
- ② 기술사법령의 기술사분류와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기술사분류를 동일하게 조정
- ③ 기술사자격명칭은 분야 중심으로 조정 (예시) “기계공학기술사(기계제작)”
- ④ 장기적으로 국제기술사분류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제안
- ⑤ 각 분회 및 개별적으로 접수된 의견(별책제작)은 원안대로 정책연구팀에 전달

한국기술사회에서 작성한 분류 안은 국제기술사 자격분류를 토대로 하였으며

- ① 15개 등록분야를 17개 분야로 확대하여, “금속공학기술사”, “원자력·방사선공학기술사” 분야를 추가하기로 하고, “금속공학기술사” 분야에는 “철야금, 비철야금, 금속재료, 금속가공, 비파괴검사”를, “원자력·방사선공학기술사” 분야에는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를 기술범위로 함.
- ② 건설공학기술사분야에 있는 “토질및기초”를 “지반공학기술사” 분야로 함.
- ③ “생명공학기술사” 분야에 있는 “해양”은 “건설공학기술사” 분야로 함
- ④ 정책연구팀에 제출할 기술사자격종목정비 의견 내용확정

## CPD소식

□ 2007. 10. 5 한국기술사회 임원, 분회(부문회)장 및 지회장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술분야	기술 범위
건설공학기술사 (Civil Engineering)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건설안전, 지적, 교통, 해양
구조공학기술사 (Structural Engineering)	토목구조, 건축구조
지반공학기술사 (Geotechnical Engineering)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환경공학기술사 (Environmental Engineering)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계공학기술사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형, 차량, 기계공정설계, 건설기계, 철도차량, 기계안전, 조선
전기공학기술사 (Electrical Engineering)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기안전
광업공학기술사 (Mining Engineering)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산업공학기술사 (Industrial Engineering)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인간공학
화학공학기술사 (Chemical Engineering)	표면처리, 화공, 세라믹, 섬유공정, 방사, 제포, 염색가공, 의류, 화공안전
정보공학기술사 (Information Engineering)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생명공학기술사 (Bio Engineering)	산림, 종자, 시설원예, 축산, 농화학, 식품,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기술분야	기술 범위
소방공학기술사 (Fire Engineering)	소방
빌딩서비스공학기술사 (Building Services Engineering)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전기설비
유류공학기술사 (Petroleum Engineering)	가스
항공우주공학기술사 (Aerospace Engineering)	항공기관, 항공기체
금속공학기술사	철아금, 비철아금, 금속재료, 금속가공, 비파괴검사
원자력공학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 기술사법 개정 주요내용

(주)신우지오엔지니어링 - 김 학 청

## I. 기본방향

기술사의 국가간 상호인정추진(Int.PE)에 따른 국제기준 도입 ⇒ 기술사법과 국내 다른 전문자격제도와 형평성 복원 ⇒ 기술사 관련 타법령 개정

**【대통령 지시사항('04. 5. 24)】**  
 「인정기술사 제도개선,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고급기술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 등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

개정 기술사법 시행일자 : 2007. 7. 27  
 - 기술사법개정공포(법률 제8268호) : 2007. 1. 26

## II. 개정기술사법 - 주요내용

### 1. 기술사의 직무(제3조①,②)

→ 기술사인력 적극 활용

- (1) 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劃·研究·設計·分

析·調査·試驗·施工·감리·評價·診斷·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問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

〈추가〉...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

-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2.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제3조의2)

〈위원회의 역할〉

- (1) 기술사 직무의 조정
- (2)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3)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 (4) 기타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 기술사 제도발전심의위원회 설치  
 (기술사 참여 5인)

### 3.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1) 政府는 技術士의 科學技術에 관한 專門知識이 産業技術發展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 ①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 수요와 공급
  - ② 기술사 활용의 장려

- ③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 ④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
- ⑤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강구

⇒ 매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

-지속적 제도발전

#### 4.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제5조의2)

- (1) 기술사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2)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간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3)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그 자격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 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절차 마련

(국제업무 과기부로 창구 일원화)

#### □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

- 심사기준
- 기술사 각 개인의 국제기술사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

#### □ 전문심사위원회

- 기술분야별 국제기술사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 검토

#### □ 수탁 기술사회

- 국제기술사 등록증명서 발급 등 국제기술사 관리

#### 5. 기술사의 교육훈련(제5조의3)

- (1)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법제22조 관련) - 100만원이하의 벌금

1.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2.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기술사의 교육 훈련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국제통용성 및 자격의 전문성,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한 기술사의무교육훈련제도 도입

#### 6.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시행령 제12조)

- (1)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자로서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기산일 이후 3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는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법 제5조의 3제2항에 따라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의 종류, 내용 및 인정기준  
(시행령 별표 2)**

**(1)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

**(가) 수강교육**

- ① 기본교육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등의 교육
- ② 전문교육 :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자율학습활동**

- 논문 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

**(2)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 기술사가 이수하는 90학점과 45학점의 교육훈련에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이 각각 12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7. 교육기관의 요건 등(시행규칙 제5조)**

- (1) 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 (2) 영 제14조제1항에서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① 교육대상자 중 기술사가 10명이상이고 교육대상자의 반 이상이 기술사인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운영
  - ② 교육훈련 관련 전담 강사를 1명 이상 확보
  - ③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확보
  - ④ 그 밖에 교육기관 공모 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것

**수강교육의 종류(시행규칙 별표 1)**

구분	인정사항		가 중 치	단 위	인정 최고 학점
교육 기관 교육	「기술사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국내외 최첨단 기술 세미나, 심포지움, 포럼 등	5~20	1건	90
		일반적인 기본교육, 전문교육	1	수강 시간	
법정 직무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1	수강 시간	60
대학 전공 교육	국내외 석사, 박사학위 과정 교육		10	취득 학점	60
그 밖의 수강교육	국내외 단체나 업체에서 실시한 기술관련 교육		0.6	취득 학점	18

### 8.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제5조의4)

- (1) 기술사는 근무처, 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 등”이라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9. 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 관리(시행령 제16조)

- (1)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한다)에 등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① 기술사의 성명, 근무처, 경력 및 학력
  - ② 기술사 종목 및 자격 취득일자
  - ③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

⇒ 기술사의 활용관리에 있어 기술사의 신고와 경력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 (기술사 경력증명서 발급)

### 10.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제5조의5)

- (1)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관리

와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2) 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술사 경력 기술사무소에 대한 실적 및 사무소 기술인력 경력관리, 타 부처관리 기술사 정보(경력사항 등) 활용 공유

### 11. 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제5조의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평가서,감정서,시제품,주형물 및 소프트웨어(이하 “설계도서등”이라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있도록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2.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제6조]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 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 13. 서명날인[제11조]

- (1)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 (2) 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한 때는 「국가기술자격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해당 기술분야 및 자격종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 14. 과태료[제22조]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①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술사 사무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분야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2007.1.26〉

  - ①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기술사
  - ②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 ③ 제5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 ④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⑤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⑥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⑦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III. 기타 제도개선

### 1.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6.11.30) 후속 조치 - 건설교통부 관련

#### (1) 개정안료

- ①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만 인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②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술사 우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700억원 이상(공사예정금액) 규모 공사의 기술사 배치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③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에 기술사를 별도항목으로 추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 ④ 시공능력평가방법 중 기술능력평가액 산정기준에 기술사 보유업체 우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2) 입법예고안 작성중**

- ①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2. 추진중인 기술사 제도 개선**

**(1) 기술사 시험을 기술사법으로 환원**

- ① 기술사법 보완
-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2) 전문가로서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확대**

- ①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관계된 설계, 시공, 감리는 원칙적으로 기술사의 관리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법 조항 신설 추진
- ② 각 사업법(130여 법령)에 기술사 업무의 법제화 지속 추진

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

- (7)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심사 및 국제기술사 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2. 기술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25호)**

- (1) 무너졌던 기술사제도를 일으켜 세우는데「한국기술사회」가 중심에 서서 추진
- (2) 기술사 교육, 경력관리, 국제기술사 등록, 기술사 사무소 관리 등 정부 수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우대정책 추진
- (3) 각종 행사와 기술사회지를 통해 기술사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제공

**IV. 한국기술사회 - 위탁업무**

**1.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 - 16호)**

- (1) 기술사의 근무처, 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
- (2)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
- (3)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
- (4)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 (5) 사무소등록 기술사의 실적관리
- (6) 기술사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